

전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170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1707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41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21. 7. 1.

판결선고 2021. 8. 19.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4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F 답 327㎡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020. 5. 1.부터 위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일까지 연 2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원고는 피고 C에게’를 ‘원고는 피고 C에게 2019. 9. 30.경’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